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1. 3. 27. (총 40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9381	
	담 당 자	정 여 운		043-719-9368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팀 장	박 영 준		043-719-7280	
	담 당 자	심 주 영		043-719-7935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팀 장	장 수 경		043-913-2321	
	담 당 자	최근하, 김환희		043-913-2283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0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1,275명(해외유입 7,5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16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066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231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45명으로 총 93,475명(92.3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07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1명(치명률 1.7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90	126	33	22	39	5	10	3	1	141	35	38	2	4	0	10	19	2
누계	93,750	30,508	3,452	8,719	4,717	2,061	1,203	1,033	224	26,453	2,197	2,012	2,435	1,275	840	3,305	2,730	586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주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5	0	13	0	0	2	0	3	12	4	11	
누계	7,525	42 (0.6%)	3,368 (44.8%)	1,297 (17.2%)	2,424 (32.2%)	371 (4.9%)	23 (0.3%)	3,135 (41.7%)	4,390 (58.3%)	4,028 (53.5%)	3,497 (46.5%)	

* 아시아(중국 외): 네팔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 파키스탄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1명), 스리랑카 1명, 요르단 1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아프리카: 적도기니 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6.(금) 0시 기준	92,630	6,424	111	1,716
3.27.(토) 0시 기준	93,475	6,079	103	1,721
변동	(+)845	(-)345	(-)8	(+)5

*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2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2.1명), 수도권에서 306명(62.5%) 비수도권에서는 184명(37.5%)이 발생하였다.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27일(0시 기준)	490	306	51	9	32	55	35	2
주간 일 평균	422.1	288.6	22.3	9.0	25.7	54.7	21.0	0.9
주간 총 확진자 수	2,955	2,020	156	63	180	383	147	6

○ 수도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99	261	229	306	283	336	306	288.6	2,020
서울	124	108	97	135	125	121	126	119.4	836
인천	20	10	12	21	11	28	39	20.1	141
경기	155	143	120	150	147	187	141	149.0	1,043

-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증사자 26명(지표포함, +5), 지인 1명(+1)

-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직장 관련	20(+3)	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5명(+1), 지인 1명(+1), 기타 1명(+1)
② 인천 집단생활* 관련	3(+3)	입소자 3명(+3)

*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체험/판매자 교육 등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교회관련) 3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교인 11명(지표포함), 기타 2명

- (경기 용인시 교회/직장 관련) 3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관련	12	교인 12명(지표포함)
② 직장 관련	2	직원 2명

- (경기 화성시 일가족/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9	가족 7명(지표포함), 기타 2명
② 어린이집 관련	6(+2)	원아 3명(+1), 가족 3명(+1)

○ 충청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6	16	17	8	24	24	51	22.3	156
대전	1	-	4	2	3	13	10	4.7	33
세종	-	-	-	-	-	-	1	0.1	1
충북	10	5	6	6	17	9	38	13.0	91
충남	5	11	7	-	4	2	2	4.4	31

- (대전 서구 주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방문자 12명(지표포함, +2)

- (대전 대덕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3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지인모임 4명(지표포함), 가족 2명, 추가전파 지인 3명

- (충북 증평군 교회 관련) 3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교인 22명(지표포함), 가족 4명

○ 호남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2	11	9	6	9	7	9	9.0	63
광주	2	2	1	2	4	2	5	2.6	18
전북	10	7	7	4	4	3	4	5.6	39
전남	-	2	1	-	1	2	-	0.9	6

- (광주 동구 노래연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10명(지표포함, +1), 지인 3명, 가족 2명, 기타 1명(+1)

○ 경북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7	24	22	29	26	30	32	25.7	180
대구	12	14	3	17	17	18	22	14.7	103
경북	5	10	19	12	9	12	10	11.0	77

- (대구 수성구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병원 관련	7	종사자 1명(지표포함), 환자 5명, 가족 1명
② 지인 관련	18(+7)	지인 4명, 가족 3명(+1), 동료 7명(+5), 기타 4명(+1)

- (대구 동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방문자 12명(지표포함, +3), 종사자 1명, 지인 4명(+3)

○ 경남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79	62	45	44	50	48	55	54.7	383
부산	18	24	8	16	20	11	33	18.6	130
울산	7	1	8	1	-	-	3	2.9	20
경남	54	37	29	27	30	37	19	33.3	233

- (부산 서구 냉장사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료 8명(지표포함), 가족 5명(+3), 기타 4명(+4), 지인 1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217(+4)	방문자 131명, 종사자 4명, 가족 32명(+2), 동료 14명, 지인 7명, 기타 29명(+2)
② 골프장 관련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③ 식품회사 관련	20	종사자 15명, 가족 4명,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1 관련	3(+1)	종사자 1명(지표포함), 이용자 1명(+1), 가족 1명
② 목욕탕2 관련	7	이용자 6명, 가족 1명
③ 목욕탕3 관련	5	이용자 2명, 종사자 2명, 가족 1명
④ 유흥시설 관련	52(+2)	종사자 26명(+1), 이용자 8명(+1), 가족 8명, 지인 4명, 동료 1명, 기타 5명
⑤ 기업 관련	105(-3)	종사자 78명, 가족 19명, 지인 2명(-4**), 기타 6명(+1)
⑥ 교회 관련	7(+7)	종사자 1명(+1), 교인 5명(+5), 가족 1명(+1)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 목욕탕/직장 → 가족/지인 → 종교시설

** (하위집단 재분류) 역학조사결과 기존 '기업관련에서' '종교시설' 관련성이 확인되어 하위집단으로 분류

○ 강원권

(주간 : 3.21일~3.27일, 단위 : 명)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3	21	9	18	27	24	35	21.0	147

- (강원 동해시 일가족 및 음식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7	가족 7명(지표포함)
② 음식점(주점) 관련	23(+16)	종사자 2명(+1), 이용자 11명(+5), 기타 10명(+10)

* (추정감염경로) 가족 → 음식점(주점) → 종사자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어린이집1 관련	31(+2)	교사 6명(지표포함), 원아 12명, 가족 9명(+1), 기타 4명(+1)
② 어린이집2 관련	9(+1)	교사 4명, 원아 2명(+1), 기타 3명
③ 어린이집3 관련	4	교사 1명, 기타 3명

* (추정감염경로) 어린이집1 → 교사 모임 → 어린이집 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2,845명으로 총 792,27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399명으로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2,056명, 화이자 백신 60,218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27일 0시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일 누계 (A)*	신규 접종자 (B)	누적 접종자 (A+B)
1차 접종자	769,429	22,845	792,274
2차 접종자	3,833	1,399	5,232

* 3월 3-5일 8-10일 12일 16-19일 22-25일 접종자 1,978명이 3월 26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6)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12,722명으로, 718,569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2%였다고 밝혔다.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3.27일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접종대상자 (A)	접종동의자 (B)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 (C)	접종률1 (C/A)	접종률2 (C/B)
요양병원 (65세 미만)	209,588	188,947	1,042	182,217	86.9	96.4
요양시설 (65세 미만)	110,959	105,023	332	99,907	90.0	95.1
코로나 1차 대응요원	78,827	68,557	2,107	60,690	77.0	88.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9,339	345,743	9,177	315,107	80.9	91.1
기타 대상자	475	475	62	430	90.5	90.5
코로나 치료병원	64,339	62,586	2	60,218	93.6	96.2
			1,399	5,232	8.1	8.4
계	853,527	771,331	12,722	718,569	84.2	93.2
			1,399	5,232	0.61	0.68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2,217명(86.9%), 요양시설은 99,907명(90.0%), 1차 대응요원은 60,690명(77.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15,107명(80.9%)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218명(93.6%)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5,232명(8.1%)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10,123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73,705명으로 접종률은 19.5%였다.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3.27일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접종대상자 (A)	접종동의자 (B)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 (C)	접종률1 (C/A)	접종률2 (C/B)
요양병원 (65세 이상)	207,635	152,844	8,243	65,672	31.6	43.0
요양시설 (65세 이상)	169,917	131,890	1,880	8,033	4.7	6.1
계	377,552	284,734	10,123	73,705	19.5	25.9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27일 0시 기준)는 총 10,261건*(신규 149건)으로,
 -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0,131건(신규 14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0건(신규 4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9건(신규 1건), 사망 사례 21건(신규 4건)이 신고되었다.
 -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7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건, (%))】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신고율 (누계)	사망사례			
				일반 ¹⁾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²⁾	중증 의심사례 ³⁾	사망사례
전체	신규	149	1.29%	140	4	1	4
	누계	10,261		10,131	100	9	2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130	1.36%	124	1	1	4
	누계	9,973		9,855	88	9	21
화이자	신규	19	0.44%	16	3	0	0
	누계	288		276	12	0	0

¹⁾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²⁾ 아나필락시스양 반응(94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³⁾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른
경련 등 신경계 반응(6건), 중환자실 입원(3건) 포함 * 중환자실 입원 1건 사망 신규로 변경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사망 사례 4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기저 질환
1	9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4.	'21. 3. 26.	1일17시간	유
2	8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4.	'21. 3. 26.	1일16시간	유
3	8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5.	'21. 3. 26.	1일4시간	유
4	8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5.	'21. 3. 26.	19시간	유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은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후 확진된 사례***는 총 5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신고 내역과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접종자 등록 내역을 비교

○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53명(92.9%), 화이자 4명(0.7%)이고, 접종 후 7일 내에 확진된 사례가 15명(26.3%), 8~14일 이내는 27명(47.3%), 15일 이후는 15명(26.3%)이다.

- 성별로는 여성이 41명(71.9%), 남성 16명(28.1%)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5명(26.0%), 30대 15명(26.0%), 50대 13명(22.8%) 순으로 20~30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예방접종 후 확진자 현황 ('21.2.26일~3.26일 0시 기준, 단위 : 명)】

구분	접종자수	계	성별		연령대					접종 후 확진까지 기간		
			남	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당일~7일	8~14일	15일 이후
계	771,284	57	16	41	15	15	8	13	6	15	27	15
아스트라제네카	707,481	53	16	37	12	15	8	12	6	12	26	15
화이자	63,803	4	-	4	3	-	-	1	-	3	1	-

○ 접종대상기관별로는 7,867개 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접종 후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기관은 36개소, 2명 이상 발생한 기관은 7개소였다.

-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사례로는 **요양병원이 4개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집단발생과 관련된 시설들이었다.

【예방접종 후 확진자 발생 기관 현황('21.2.26일~3.26일 0시 기준, 단위 : 명, 개소)】

전체 기관수 (개소)	1명 발생					2명 이상 발생					
	발생 기관수 (개소)	확진자 신분				발생 기관수 (개소)	확진자 신분				비고
		계	의료진	일용직·외 종사자	환자		계	의료진	일용직·외 종사자	환자	
7,867	36	36	9	26	1	7	21	7	13	1	2~5명

* 의료진 외 종사자(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 (기타 종사자) 기타 방역대응, 요양시설 종사자 등

○ 더불어, 집단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후 양성자들의 감염 추정 노출 시점 등을 조사하여 **전체적인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추진단은 3월29일(월) **‘전문가 초청 예방접종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4월초 실시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에 앞서, - 실제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직접 받아, 감염, 백신, 이상반응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질문수집)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가족 중 75세 이상 어르신 질문, 1339콜센터 유입 질문
- ** (참여 전문가) 이재현 교수(연세의대 알레르기 내과),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최원석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 추진단은 현재,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매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백신접종과 신고사례와의 인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발표하고 있으며,
 -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전국 예방접종 정보제공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과학적 근거기반의 신속·투명한 백신소통**에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 밝혔다.
-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 예방접종전, ▲ 예방접종시, ▲ 예방접종후** 다음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접종 전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아야 한다.
 -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이나 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 **접종부위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 **진료를 받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법령 규정
 8.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국외 현황
 10.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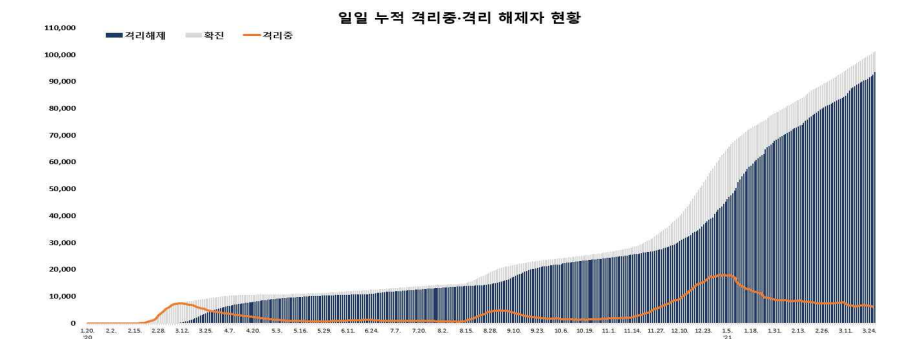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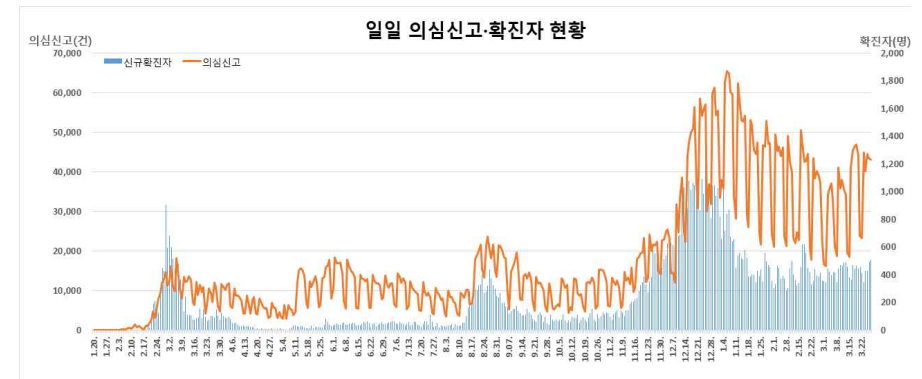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일일 확진자 현황 (3.27일 0시 기준, 101,275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증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6(금) 0시 기준	7,529,403	100,770	92,630	6,424	1,716	77,409	7,351,224
3.27(토) 0시 기준	7,572,568	101,275	93,475	6,079	1,721	75,174	7,396,119
변동	+43,165	+505	+845	-345	+5	-2,235	+44,895

*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지역별 확진자 현황(3.27. 0시 기준, 101,27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6	1	31,486	(31.09)	323.48
부산	33	0	3,596	(3.55)	105.40
대구	22	1	8,884	(8.77)	364.62
인천	39	0	4,964	(4.90)	167.92
광주	5	0	2,202	(2.17)	151.16
대전	10	0	1,258	(1.24)	85.34
울산	3	2	1,133	(1.12)	98.78
세종	1	0	251	(0.25)	73.32
경기	141	4	28,070	(27.72)	211.84
강원	35	1	2,276	(2.25)	147.74
충북	38	1	2,113	(2.09)	132.11
충남	2	0	2,609	(2.58)	122.92
전북	4	1	1,393	(1.38)	76.65
전남	0	0	911	(0.90)	48.85
경북	10	1	3,483	(3.44)	130.82
경남	19	0	2,889	(2.85)	85.95
제주	2	0	622	(0.61)	92.73
검역	0	3	3,135	(3.10)	-
총합계	490	15	101,275	(100)	195.33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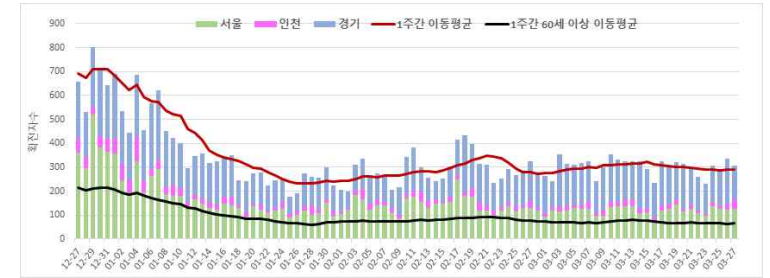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6,079	1,746	203	156	239	28	50	69	5	2,060	253	155	80	119	24	131	400	16	345
격리해제	93,475	29,318	3,275	8,512	4,668	2,153	1,192	1,027	245	25,476	1,978	1,898	2,494	1,218	879	3,277	2,474	605	2,786
사망	1,721	422	118	216	57	21	16	37	1	534	45	60	35	56	8	75	15	1	4
합계	101,275	31,486	3,596	8,884	4,964	2,202	1,258	1,133	251	28,070	2,276	2,113	2,609	1,393	911	3,483	2,889	622	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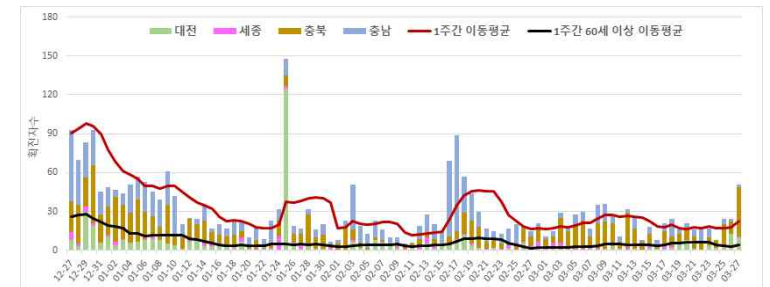
*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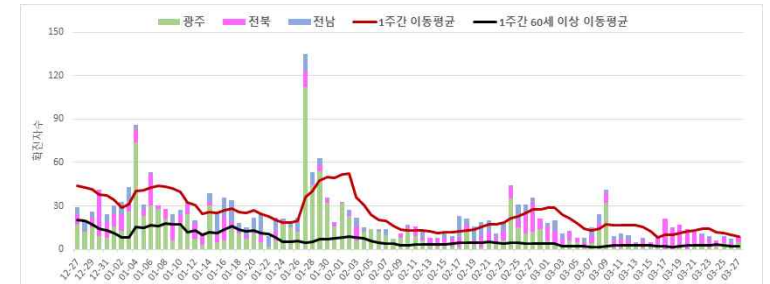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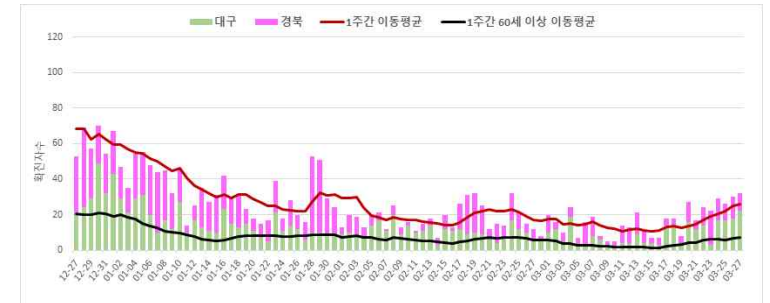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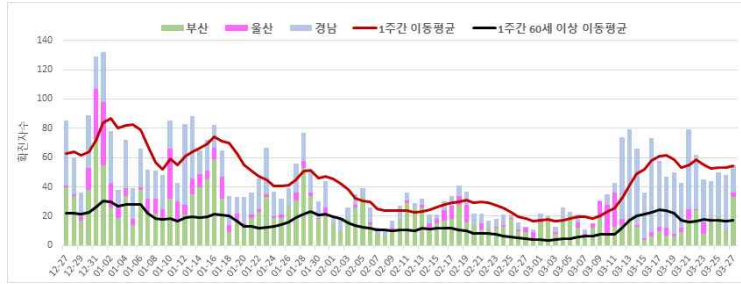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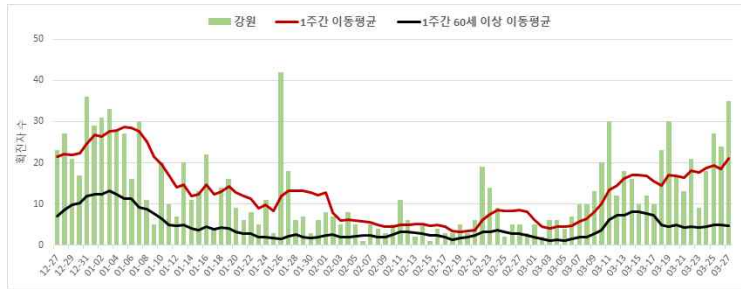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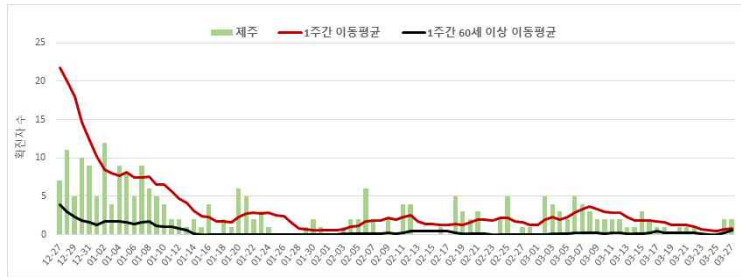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3]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27. 0시 기준, 101,27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505 (100)	101,275 (100)	195.33	
성별	남성	244 (48.32)	50,254 (49.62)	194.31
	여성	261 (51.68)	51,021 (50.38)	196.35
연령	80세 이상	10 (1.98)	4,686 (4.63)	246.73
	70-79	37 (7.33)	7,525 (7.43)	208.62
	60-69	81 (16.04)	15,732 (15.53)	247.97
	50-59	86 (17.03)	18,712 (18.48)	215.90
	40-49	78 (15.45)	14,692 (14.51)	175.13
	30-39	75 (14.85)	13,596 (13.42)	192.98
	20-29	62 (12.28)	15,195 (15.00)	223.25
	10-19	48 (9.50)	6,861 (6.77)	138.87
0-9	28 (5.54)	4,276 (4.22)	103.07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27.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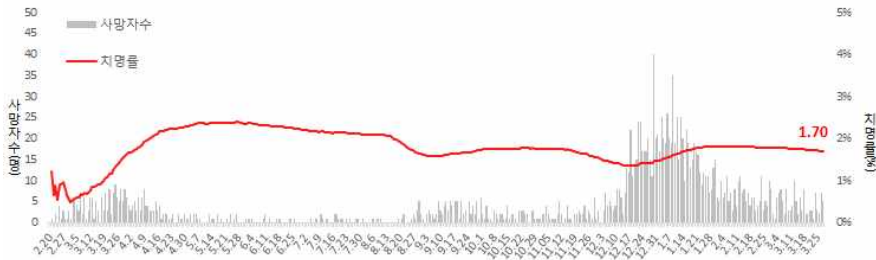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721 (100)	1.70	
성별	남성	5 (100.00)	857 (49.80)	1.71
	여성	0 (0.00)	864 (50.20)	1.69
연령	80세 이상	2 (40.00)	959 (55.72)	20.47
	70-79	2 (40.00)	482 (28.01)	6.41
	60-69	1 (20.00)	198 (11.50)	1.26
	50-59	0 (0.00)	58 (3.37)	0.31
	40-49	0 (0.00)	14 (0.81)	0.10
	30-39	0 (0.00)	7 (0.41)	0.05
	20-29	0 (0.00)	3 (0.17)	0.02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계	105	99	103	100	100	101	102	104	103	101	111	111	111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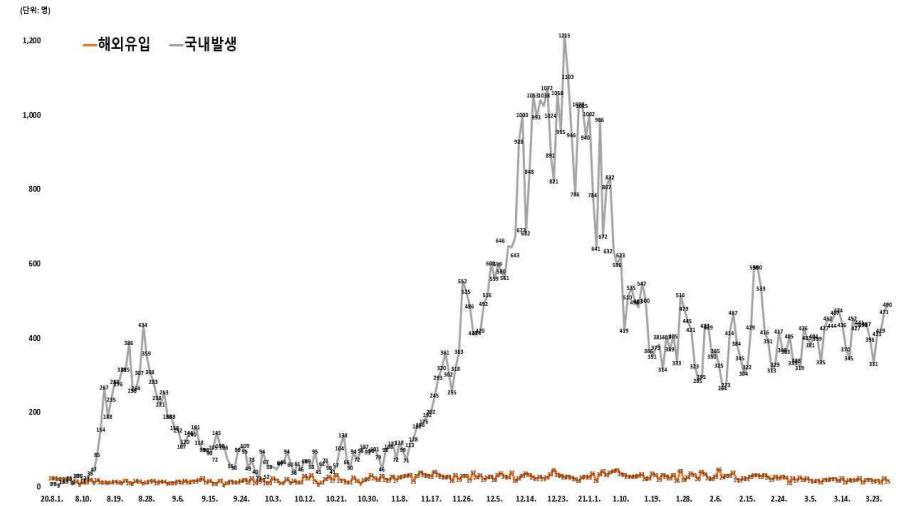
구분	위중증	(%)
계	103	(100.0)
80세 이상	26	(25.2)
70-79세	34	(33.0)
60-69세	36	(35.0)
50-59세	4	(3.9)
40-49세	2	(1.9)
30-39세	1	(1.0)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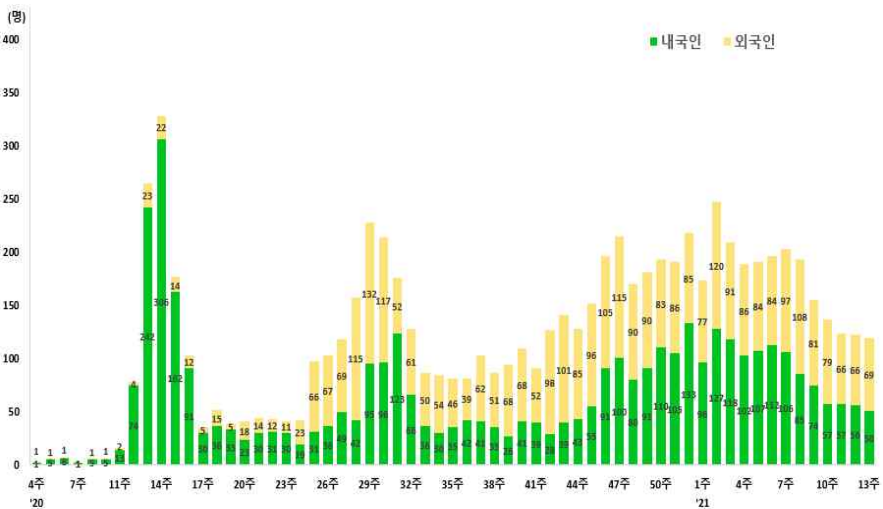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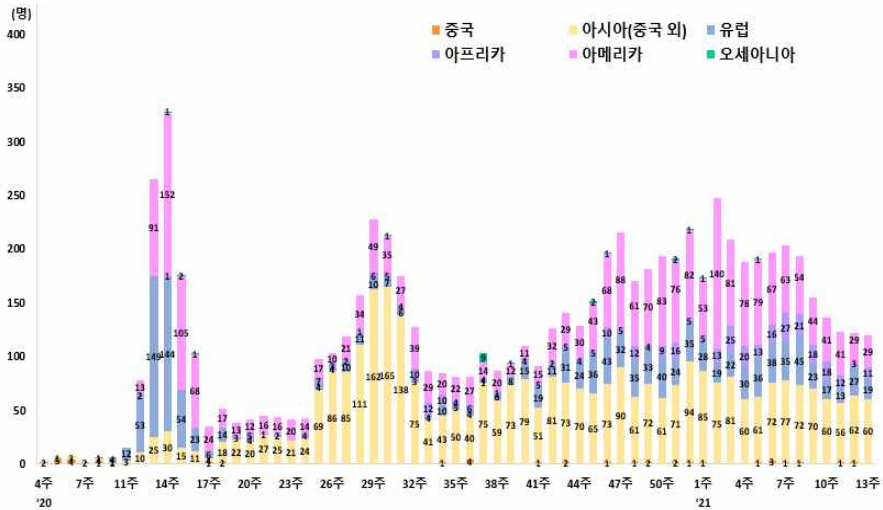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14일 0시~'21.3.27일 0시까지 신고된 6,102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31,486	978	11,706	8	11,595	103	10,392	8,410	127
부산	3,596	144	2,182	12	2,112	58	752	518	33
대구	8,884	165	6,574	4,512	2,054	8	1,149	996	23
인천	4,964	247	2,194	2	2,182	10	1,671	852	39
광주	2,202	141	1,762	9	1,747	6	143	156	5
대전	1,258	55	653	2	650	1	348	202	10
울산	1,133	100	811	16	790	5	139	83	5
세종	251	27	122	1	120	1	52	50	1
경기	28,070	1,617	11,006	29	10,898	79	9,483	5,964	145
강원	2,276	79	1,216	17	1,198	1	647	334	36
충북	2,113	101	1,169	6	1,156	7	519	324	39
충남	2,609	174	1,359	0	1,358	1	654	422	2
전북	1,393	118	980	1	978	1	151	144	5
전남	911	71	641	1	629	11	105	94	0
경북	3,483	178	2,417	565	1,848	4	492	396	11
경남	2,889	159	1,858	33	1,792	33	487	385	19
제주	622	36	386	0	385	1	110	90	2
검역	3,135	3,135	0	0	0	0	0	0	3
합계	101,275	7,525	47,036	5,214	41,492	330	27,294	19,420	505
	(%)	(7.4)	(46.4)	(5.1)	(41.0)	(0.3)	(27.0)	(19.2)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7.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¹⁾	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²⁾	
신규	-1	38,066	38,045	0	21	0	82
서울	0	13,592	13,592	0	0	0	21
경기	-1	22,356	22,335	0	21	0	57
인천	0	2,118	2,118	0	0	0	4
누계	102	2,957,697	2,935,212	4,235	18,202	483 ³⁾	7,705
서울	26	1,265,014	1,256,884	1,485	6,625	20	3,604
경기	70	1,469,738	1,455,674	2,719	11,318	27	3,665
인천	6	222,945	222,654	31	259	1	43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4) 광주 1명, 대구 1명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1.~3.27.)

구분	3.21.	3.22.	3.23.	3.24.	3.25.	3.26.	3.27.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7,710	42,510	80,664	72,083	77,166	76,007	81,231	477,371	10,530,26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¹⁾	23,764	23,250	45,026	40,220	44,649	43,544	43,165	263,618	7,572,568
임시선별검사 소 검사 건수(건) ²⁾	23,946	19,260	35,638	31,863	32,517	32,463	38,066	213,753	2,957,697
신규 확진자 수(명)	456	415	346	428	430	494	505	3,074	101,275
임시선별검사 소 확진자 수(명)	57	50	37	55	68	85	82	434	7,705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누적발생 8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9,718,930	540,320	65,326	1,293	1.82	8,978.53
브라질	12,220,011	300,685	89,992	2,009	2.46	5,747.89
인도	11,846,652	160,949	59,118	257	1.36	858.45
러시아	4,501,859	97,017	9,167	405	2.16	3,085.58
프랑스	4,351,506	92,831	45,401	223	2.13	6,408.70
영국	4,319,132	126,445	6,220	63	2.93	6,614.29
이탈리아	3,464,543	106,799	23,681	460	3.08	5,726.52
스페인	3,247,738	74,420	3,573	13	2.29	6,939.61
터키	3,120,013	30,619	28,731	157	0.98	3,701.08
독일	2,734,753	75,623	21,573	183	2.77	3,263.43
콜롬비아	2,353,210	62,394	5,986	120	2.65	4,623.20
아르헨티나	2,269,877	54,946	8,300	123	2.42	5,021.85
멕시코	2,208,755	199,627	5,714	579	9.04	1,713.54
폴란드	2,189,966	51,305	35,145	445	2.34	5,793.56
이란	1,830,823	62,142	7,506	97	3.39	2,179.55
우크라이나	1,614,707	31,461	18,132	326	1.95	3,694.98
남아프리카공화국	1,541,563	52,535	1,554	163	3.41	2,599.60
체코	1,503,307	25,639	7,946	189	1.71	14,049.60
페루	1,492,519	50,656	11,260	182	3.39	4,522.78
인도네시아	1,482,559	40,081	6,107	98	2.70	542.07
네덜란드	1,228,647	16,396	7,740	25	1.33	7,185.07
칠레	954,762	22,524	6,979	122	2.36	4,998.75
캐나다	946,370	22,759	4,050	24	2.40	2,510.27
루마니아	919,794	22,719	6,651	140	2.47	4,790.59
벨기에	854,608	22,816	5,518	30	2.67	7,367.31
이스라엘 ²⁾	829,752	6,131	-	-	0.74	9,537.38
필리핀	693,048	13,095	8,773	56	1.89	632.34
파키스탄	640,988	14,028	3,946	63	2.19	290.17
헝가리	614,612	19,499	11,265	275	3.17	6,336.21
일본	462,840	8,967	1,943	29	1.94	365.88
아랍에미리트	448,637	1,466	2,043	10	0.33	4,531.69
네팔	276,509	3,020	120	0	1.09	950.20
나이지리아	162,178	2,031	0	0	1.25	78.69
미얀마	142,340	3,205	25	1	2.25	261.65
중국	90,159	4,636	12	0	5.14	6.26
태국	28,577	92	134	0	0.32	40.94
베트남	2,579	35	3	0	1.36	2.65
대한민국	101,275	1,721	505	5	1.70	195.38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p>▶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p> <p>*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경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p> <p>-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p>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p>▶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p>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형종사자 포함)</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p> <p>▶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p> <p>▶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노래연습장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p>▶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p> <p>▶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p> <p>*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p> <p>▶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p>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실내체육시설 (실내·거울·스포츠시설 포함)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p>▶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영화관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p>
공연장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p>
PC방	<p>▶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p> <p>▶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오락실·멀티방 등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독서실·스터디카페	<p>▶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p> <p>▶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아·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p>▶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p> <p>▶ 마스크 착용</p> <p>▶ 주기적 환기·소독</p>
마트·상점 (300㎡ 이상)	<p>▶ 마스크 착용</p> <p>▶ 주기적 환기·소독</p>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p>▶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p> <p>▶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p> <p>▶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p> <p>▶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p>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골센터, 유통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찰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증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아·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 접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차	22,845	4,735	1,863	781	1,713	907	520	480	40	4,733	753	821	1,570	1,357	675	706	888	303
	1,399	468	52	240	37	52	0	0	0	39	26	22	196	24	78	0	165	0
2차	792,274	132,796	66,173	37,338	45,809	33,719	24,753	16,228	2,416	165,677	23,976	24,330	33,122	37,307	40,017	40,895	58,588	9,130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 3월 3-5일 8~10일 12일 16~19일 22~25일 접종자 1,978명이 3월 26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6)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1,231,079	186,567	99,849	60,842	71,286	45,309	39,576	23,339	3,851	276,530	38,131	38,809	53,574	56,949	60,628	72,414	89,108	14,317	
접종자	1차	792,274	132,796	66,173	37,338	45,809	33,719	24,753	2,416	165,677	23,976	24,330	33,122	37,307	40,017	40,895	58,588	9,130	
	2차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접종률	1차	64.4	71.2	66.3	61.4	64.3	74.4	62.5	69.5	62.7	59.9	62.9	62.7	61.8	65.5	66.0	56.5	65.7	63.8
	2차	0.42	1.41	0.16	1.08	0.36	0.17	0	0.14	0	0.09	0.19	0.16	0.63	0.13	0.36	0	0.43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64,339	14,555	4,510	3,193	9,307	1,195	3,936	2,970	836	10,225	1,219	2,700	1,608	1,209	840	2,189	1,687	2,160	
접종자	1차	60,218	13,307	4,175	2,953	8,728	1,140	3,527	2,828	786	9,812	1,181	2,542	1,523	1,174	820	2,120	1,591	2,011
	2차	5,232	2,639	162	659	257	79	0	32	0	262	72	61	338	72	220	0	379	0
접종률	1차	93.6	91.4	92.6	92.5	93.8	95.4	89.6	95.2	94.0	96.0	96.9	94.1	94.7	97.1	97.6	96.8	94.3	93.1
	2차	8.1	18.1	3.6	20.6	2.8	6.6	0	1.1	0	2.6	5.9	2.3	21.0	6.0	26.2	0	22.5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1,166,740	172,012	95,339	57,649	61,979	44,114	35,640	20,369	3,015	266,305	36,912	36,109	51,966	55,740	59,788	70,225	87,421	12,157
	접종자	732,056	119,489	61,998	34,385	37,081	32,579	21,226	13,400	1,630	155,865	22,795	21,788	31,599	36,133	39,197	38,775	56,997	7,119
	접종률	62.7	69.5	65.0	59.6	59.8	73.9	59.6	65.8	54.1	58.5	61.8	60.3	60.8	64.8	65.6	55.2	65.2	58.6
유증자	대상자	417,223	34,317	49,235	19,575	19,620	19,997	12,809	10,421	893	88,440	7,005	11,358	18,764	23,735	25,293	30,856	42,915	1,990
	접종자	247,889	18,414	28,311	10,204	12,758	13,515	7,267	6,516	573	52,044	4,500	7,535	11,554	15,218	16,517	15,932	25,997	1,034
	접종률	59.4	53.7	57.5	52.1	65.0	67.6	56.7	62.5	64.2	58.8	64.2	66.3	61.6	64.1	65.3	51.6	60.6	52.0
유증자	대상자	280,876	20,540	8,848	11,068	20,934	5,094	9,088	2,947	916	89,066	14,408	14,172	16,170	12,176	14,307	19,227	16,131	5,784
	접종자	107,940	7,994	3,746	4,254	8,231	2,451	3,514	1,221	386	30,924	5,727	5,985	6,629	4,914	5,620	7,127	6,723	2,494
	접종률	38.4	38.9	42.3	38.4	39.3	48.1	38.7	41.4	42.1	34.7	39.7	42.2	41.0	40.4	39.3	37.1	41.7	43.1
1차	대상자	78,827	10,823	4,301	2,003	4,840	1,652	1,445	1,344	604	12,859	4,695	3,778	6,280	4,513	6,233	6,469	5,502	1,486
	접종자	60,690	7,931	3,410	1,585	3,013	1,341	1,248	1,121	480	9,910	3,504	2,791	5,438	3,671	4,924	4,671	4,455	1,197
	접종률	77.0	73.3	79.3	79.1	62.3	81.2	86.4	83.4	79.5	77.1	74.6	73.9	86.6	81.3	79.0	72.2	81.0	80.6
2차	대상자	389,339	106,167	32,955	25,003	16,585	17,371	12,298	5,657	602	75,631	10,804	6,801	10,752	15,315	13,955	13,673	22,873	2,897
	접종자	315,107	84,986	26,531	18,342	13,079	15,272	9,197	4,542	191	62,722	9,064	5,477	7,978	12,329	12,136	11,045	19,822	2,394
	접종률	80.9	80.0	80.5	73.4	78.9	87.9	74.8	80.3	31.7	82.9	83.9	80.5	74.2	80.5	87.0	80.8	86.7	82.6
기타대상자	대상자	475	165	0	0	0	0	0	0	0	309	0	0	0	1	0	0	0	
	접종자	430	164	0	0	0	0	0	0	0	265	0	0	0	1	0	0	0	
	접종률	90.5	99.4	0	0	0	0	0	0	0	85.8	0	0	0	100.0	0	0	0	

* 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환자를 포함함

** 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6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2021.03.2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되나요?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영양제 수액입부금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출영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장애원인 및 장애 정도) 정신장애 등록표(이전 장애등급 포함)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

*가내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02 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0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http://ncv.kdca.go.kr>)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7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법령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물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채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애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붙임 8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목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의무기록 사본 ⑤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⑥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 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⑤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② 사망진단서 ③ 부검소견서 ④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9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국외 현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 WHO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피해보상프로그램이 있는 국가는 25개국(12.9%) 수준이고,
 - 백신피해보상프로그램이 있는 25개국 중 20개국(80%)은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른 고소득 선진국(High Income Countries)에 해당함

WHO 지역	운영국가 현황	회원국가명
전체	25/194 (12.9%)	-
아프리카 (AFRO)	0/47 (-)	없음
아메리카 (AMRO)	2/35 (6%)	미국, 캐나다의 퀘벡 지역
동부지중해 (EMRO)	0/21 (-)	없음
유럽 (EURO)	16/53 (30%)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동남아시아 (SEARO)	2/11 (18%)	네 팔, 태국
서태평양 (WPRO)	5/27 (19%)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WHO 지역	구분	피해보상체계	
		있는 국가	없는 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위원회	있음	16 (64%)	113 (67%)
	없음	9 (36%)	56 (3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있음	25 (100%)	145 (86%)
	없음	0	24 (14%)

* (자료원) Mungwira RG, Maure CG, Zuber PLF: Economic and immunization safety surveillanc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implementing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Vaccine 2019, 37(31):4370-4375.

□ 해외 주요국 국가보상제도 운영 현황

1. 미국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 (제도개요) 청구인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연방청구법원(관할)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90일 이내 수용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백신 제조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신청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부터 3년 이내,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청구인이 ▲이상반응이 기준으로 제시된 시간 내에 발생하였으며, ▲이상반응이 백신에 의한 것이고, ▲기존의 건강상태가 백신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함

※ 이상반응이 '① 백신 투여 후 6개월 이상 지속 ② 입원 혹은 수술의 원인 ③ 사망의 원인'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상금) 백신피해보상신탁기금*을 활용 최대 \$250,000(약 28,300만원) 보상

* 백신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1회 접종 당 75센트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마련(*16.9월 기준)

2. 영국

○ (제도개요) 백신피해보상법령(Vaccine Damage Payment Act)에 따라 '피해 발생확률'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한 의사가 피해보상* 여부 검토

* '심한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의 보상기준은 명시하지 않음('심한 장애'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포함한 최소 60%의 장애를 말함)

-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의사가 검토를 거부할 경우 백신피해재판소로 회부

* (신청기간) 피해자 사망 시, 백신 접종일로부터 6년까지 신청 가능

○ (보상금) 최대 £120,000 (약 18,600만원) 지급

3. 일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 (제도개요) 「예방접종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등 보상 지급

*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보이는 경우를 의미

-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자가 시정촌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면, 도도부현지사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이 심의회(질병·장애인정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보상 인정여부를 결정

* (신청기간) 예방접종 후 건강피해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 (보상금)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 44,200,000엔(약 46,100만원) 지급

붙임 10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상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자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의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체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